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7.11.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7.11.1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 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7. 11.9)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코드: 17009)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되, 50%이상을 바이오헬스케어주식에 투자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모집[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효력발생일	2017.11.14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C	C-E	S
가입자격		제한 없음	온라인 판매시스템으로 가입	제한 없음	온라인 판매시스템으로 가입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납입금액의 0.5%이내	-	-	-
후취판매수수료		-	-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수수료		-				
보수(연, %)	판매	0.53	0.26	1.5	1.0	0.35
	운용 등	운용(0.715) 신탁(0.03) 일반사무관리(0.0125)				
	기타비용	0.004	0.004	0.005	0.004	0.004
	총보수·비용	1.2915	1.0215	2.2625	1.7615	1.1115

※종류 C는 이연판매보수(CDSC)제도가 적용(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
※생략된 종류(Class): C2,C3,C4,C5,C-F,C-W,C-H,S-I, S-P,C-P,C-P2,A-G,C-G,C-PE,C-P2E(생략된 종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 ※ 보수 지급시기: 매3개월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5시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기준가	1.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1좌당 1원)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 2. 공시방법: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 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바이오헬스케어 관련주식에 50%이상을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추구를 주요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①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되, 50%이상을 바이오헬스케어주식에 투자
②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종목 발굴투자와 주식편입비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성과 지향
③ 변동성이 큰 헬스케어 섹터 특성을 고려하여 CB(전환사채)투자 등을 통해 변동성 완화 추구
④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모든 산업으로 투자영역 확대(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7.11.2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규모(팀운용)
한용남	이승훈	42개 / 2,165억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6/11/03~ 2017/11/02	2015/11/03~ 2016/11/02	2014/11/03~ 2015/11/02	2013/11/03~ 2014/11/02	2012/11/03~ 2013/11/02
운용펀드	2009-11-03	16.96	-16.94	35.96	12.82	0.36
ClassA	2009-11-03	15.48	-18.05	34.30	11.40	-0.90
ClassC	2009-12-15	14.38	-18.87	33.24	10.34	-1.85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ClassA(선취판매수수료 부과)및 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 참고.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주식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종목별 마이너스 수익률 진행 정도에 대해 구간별로 관리할 예정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o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o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

o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매입일로부터 4년 경과 후 종류 C5수익증권으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5%에서 1.0%로 변경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목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17009
A	17010
C	17011
C2	17012
C3	17013
C4	17014
C5	26806
C-E	17015
C-F	17016
C-H	17017
C-W	17018
S	AQ624
S-I	AX869
S-P	B3683
C-P	B3910
C-P2	B3911
A-E	BG511
A-G	BP542
C-G	BP543
C-PE	BT384
C-P2E	BT3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17009
A	17010
C	17011
C2	17012
C3	17013
C4	17014
C5	26806
C-E	17015
C-F	17016
C-H	17017
C-W	17018
S	AQ624
S-I	AX869
S-P	B3683
C-P	B3910
C-P2	B3911
A-E	BG511
A-G	BP542
C-G	BP543
C-PE	BT384
C-P2E	BT3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9.11.3	최초 설정
2009.12.1	집합투자규약 변경(Class C-F 가입자격 추가)
2010.2.12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5.3	집합투자규약 변경(판매보수 인하 및 클래스 추가(Class C5))
2011.4.15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변경)
2012.1.18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위험등급 상세설명 일부 추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전용클래스 소득공제요건 일부 수정
2013.1.9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기업공시서식 변경 사항 반영, 법개정사항반영)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개정 반영 :법 제89조(수시공시) 법시행령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92조(자산운용보고서) 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2. 02. 22)사항 반영
2013.11.20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법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2014.3.17	집합투자규약 변경(S클래스 신설)
2014.11.24	- 집합투자규약 변경(S-I클래스 신설)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규약변경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 반영,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예정 안내(2014.12.22 시행 / HSBC펀드서비스->외환펀드서비스)
2015.5.29	- 집합투자규약 변경(Class S-P, Class C-P, Class C-P2 신설)
2015.12.30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법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채권 및 어음 신용평가등급관련 문구 수정) - 비교지수 삭제
2016.7.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1등급->2등급)
2016.7.30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15시->15시 30분)
2016.8.12	Class A-E 신설
2016.11.9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 1등급)
2016.12.2	-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재표 정정
2017.4.29	Class A-G, Class C-G신설
2017.7.28	Class C-PE, Class C-P2E신설
2017.8.11	부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 (방태석-> 이승훈)
2017.11.1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동부자산운용 -> DB자산운용 ·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www.dongbuam.co.kr ->www.db-asset.co.kr
2017.11.14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집합투자규약 변경(환매수수료 삭제 및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D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3층(대표전화 : 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7.11.2 기준)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성 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한용남	1976년	책임운용전문인력	42개	2,165억	-D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현직) -동부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 Quant Analyst -동부자산운용 경영지원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이승훈	1973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4개	313억	- D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현직) - IBK자산운용 주식운용3팀 팀장, 주식운용 - KB투자증권 자산운용팀, 주식운용 - SEI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운용 및 리서치 - 현대투자신탁운용 Research Analyst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의 팀운용입니다.
-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홍현기	2009.11.03 ~ 2011.4.14
한용남	2011.4.15~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A	C	C2	C3	C4	C5	C-F	C-W
가입자격	제한없음		Class C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Class C2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Class C3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Class C4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Fund,전문투자자,보험업법상특별계정, 50억이상법인	Wrap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업자	연0.7150%	연0.7150%	연0.7150%	연0.7150%	연0.7150%	연0.7150%	연0.7150%	연0.7150%
판매회사	연0.5300%	연1.5000%	연1.3770%	연1.2390%	연1.1150%	연1.0000%	연0.0500%	연0.0000%
신탁업자	연0.0300%	연0.0300%	연0.0300%	연0.0300%	연0.0300%	연0.0300%	연0.0300%	연0.0300%
사무관리	연0.0125%	연0.0125%	연0.0125%	연0.0125%	연0.0125%	연0.0125%	연0.0125%	연0.0125%

종류	C-E	C-H	S-I	S
가입자격	인터넷가입 투자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업자	연 0.7150%	연 0.7150%	연 0.7150%	연 0.7150%
판매회사	연 1.0%	연 1.0%	연 0.015%	연 0.3500%
신탁업자	연 0.0300%	연 0.0300%	연 0.0300%	연 0.0300%
사무관리	연 0.0125%	연 0.0125%	연 0.0125%	연 0.0125%

종류	S-P	C-P	C-P2	A-E
가입자격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한 자	인터넷가입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			납임금액의 0.5%이내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업자	연 0.7150%	연 0.7150%	연 0.7150%	연 0.7150%
판매회사	연 0.2200%	연 0.7500%	연 0.800%	연 0.260%
신탁업자	연 0.0300%	연 0.0300%	연 0.0300%	연 0.0300%
사무관리	연 0.0125%	연 0.0125%	연 0.0125%	연 0.0125%

종류	A-G	C-G	C-PE	C-P2E
가입자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인터넷 등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임금액의 0.7%이내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업자	연 0.7150%	연 0.7150%	연 0.7150%	연 0.7150%
판매회사	연 0.3700%	연 0.7000%	연 0.3750%	연 0.4000%
신탁업자	연 0.0300%	연 0.0300%	연 0.0300%	연 0.0300%
사무관리	연 0.0125%	연 0.0125%	연 0.0125%	연 0.0125%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수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바이오헬스케어 관련주식에 50%이상을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추구를 주요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60%이상,단, 바이오헬스케어주식에의 투자는 50%이상)**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1-1.제1호의 주식 중 바이오-Technology, 의료장비 및 서비스, 제약 등의 업종과 관련된 주식을 '바이오헬스케어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③	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집합투자증권 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⑥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국채선물등에 투자하여 헷지목적 또는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함)
⑦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차입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②,③,④,⑤ 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②,③,④,⑤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제79조 제2항 제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회사 발행 지분 증권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초과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집합투자 증권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 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동일종목투자의 한도,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의 조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 이후 비교지수였던 (MKF제약&바이오지수(실링) x 90%) + (국내 91일물 CD금리 x 10%)를 작성기준일부터 비교지수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MKF제약&바이오지수는 특정 업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분산을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추후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지수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기본운용전략

①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되, 50%이상을 바이오헬스케어주식에 투자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란?

바이오-Technology, 의료장비 및 서비스, 제약 등 건강관련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설명]

분야	설명
바이오-Technology	- 바이오 기술은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초기 성장 국면으로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식량, 환경, 농업 등과의 결합이 가능한 상황임. - 인슐린, 성장호르몬(1세대), DNA 등 유전자 치료제(2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단백질 구조분석 등의 바이오 업체
의료장비 및 서비스	- 과거 의료장비 시장은 치료중심의 대형병원, 의원급 장비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고령화,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로 진단장비 중심의 개인 장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전자 진단시스템, 분석기 등 의료장비 생산 기업, 병원, 약국 관리 서비스, 사무지원 시스템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제약	- 1990년대까지의 높은 성장을 보였던 화학의약품은 2000년대부터 성장은 정체되고 있음. 시장의 정체에 따라 거대 제약회사의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생산기업, 동물약품 제조 기업

②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종목 발굴투자와 주식편입비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성과 지향

③ 변동성이 큰 헬스케어 섹터 특성을 고려하여 CB(전환사채)투자 등을 통해 변동성 완화 추구

④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모든 산업으로 투자영역 확대(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2) 세부운용전략

①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의료기기 섹터에 장기적인 Overweight전략
- 해외 다국적 제약사에 Licensing out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업체 장기 보유
- 바이오, 헬스케어의 다양한 산업부문에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 국내에서 독점적인 제품력으로 높은 시장점유가 가능한 업체
- 비교 가능한 국내 대형제약사 간의 Pair Trading

② 편입비 전략 : 변동성이 큰 섹터 특성을 감안 주식편입비를 70~9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

- 섹터전체가 시장대비 Underperform이 예상되는 경우 종목별 대응을 통해 편입비 조정
- 관련기업의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하여 주식변동성을 축소하면서도 일정부분 상승에 참여

(3) 추가수익 추구 전략

- 관련기업의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 사채)에의 투자

(4) 위험관리

주식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종목별 마이너스 수익률 진행 정도에 대해 구간별로 관리할 예정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DB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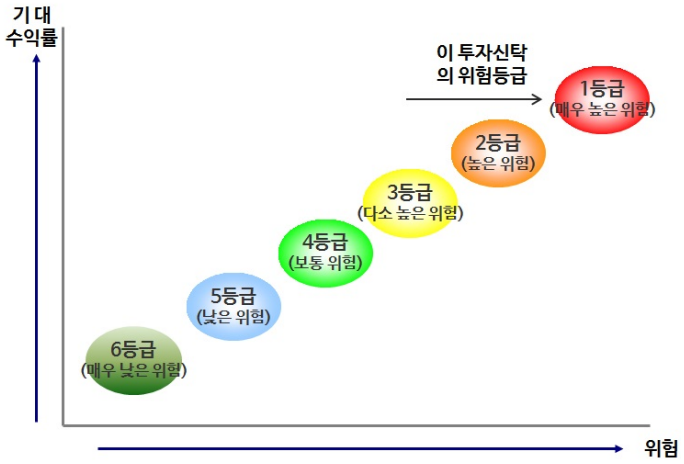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2017.11.2)기준 변동성은 **25.12** %로 아래 기준에 의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입니다.

등급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부동산, 특별자산,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CP(A3등급)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집합투자기구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표준편차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5.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며,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략상 헤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수 추종을 운용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종지수의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담보수준, 신용보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하여 분류합니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C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C2	Class C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3	Class C2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4	Class C3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5	Class C4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Class C-F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Class C-H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Class C-W	수익자가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lass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Class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Class 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Class 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3 시 30 분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3 시 30 분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 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 투자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Class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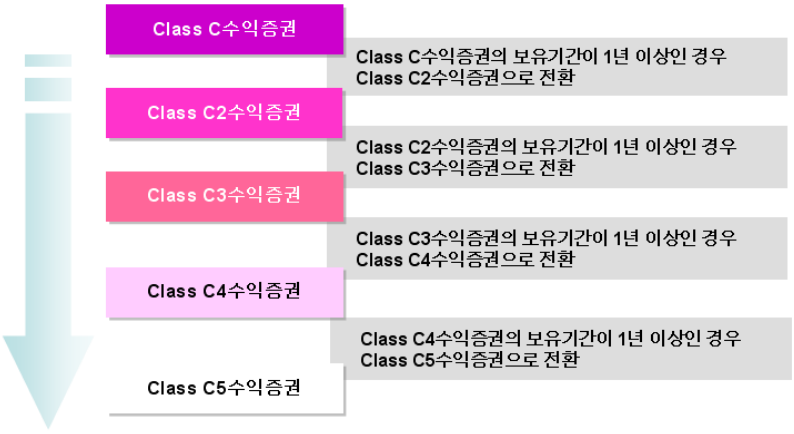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 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1좌당1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 보수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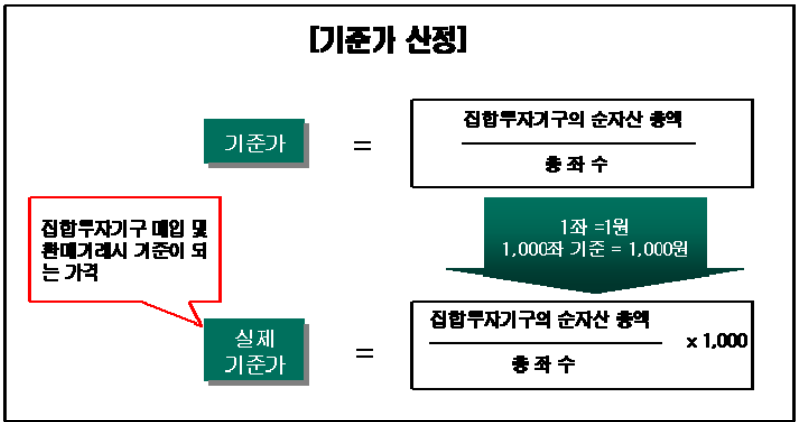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이내	-	-	-
C	제한없음	-			
C2	C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C3	C2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C4	C3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C5	C4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				
C-E	인터넷가입 투자자				
C-F	Fund,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50억이상법인				
C-H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보유자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A-E	인터넷가입 투자자,	납입금액의 0.5%이내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7%이내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판매	수탁	일반사무관리	기타 비용주1)	총 보수·비용 비율 TER2)	증권거래비용주3)
A	0.715	0.53	0.03	0.0125	0.004	1.292	0.132
C	0.715	1.50	0.03	0.0125	0.005	2.262	0.081
C2	0.715	1.377	0.03	0.0125	0.004	2.139	0.111
C3	0.715	1.239	0.03	0.0125	0.004	2.001	0.218

C4	0.715	1.115	0.03	0.0125	0.004	1.877	0.157
C5	0.715	1.00	0.03	0.0125	0.003	1.76	0.151
C-F	0.715	0.05	0.03	0.0125	0.004	0.812	0.121
C-W	0.715	0.00	0.03	0.0125	0.001	0.759	0.136
C-E	0.715	1.00	0.03	0.0125	0.004	1.762	0.133
C-H	0.715	1.00	0.03	0.0125	0	1.758	0
S	0.715	0.35	0.03	0.0125	0.004	1.112	0.123
S-I	0.715	0.015	0.03	0.0125	-	0.7725	-
S-P	0.715	0.22	0.03	0.0125	0.004	0.982	0.133
C-P	0.715	0.75	0.03	0.0125	0.005	1.512	0.152
C-P2	0.715	0.80	0.03	0.0125	0.004	1.562	0.151
A-E	0.715	0.26	0.03	0.0125	0.004	1.021	0.18
A-G	0.715	0.37	0.03	0.0125	-	1.1275	-
C-G	0.715	0.70	0.03	0.0125	0	1.458	0.001
C-PE	0.715	0.375	0.03	0.0125	0	1.133	0.025
C-P2E	0.715	0.4	0.03	0.0125	0	1.158	0.05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2016.11.3~2017.11.2)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TER)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6.11.3~ 2017.11.2)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지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원)

투자기간	1 년	3 년	5 년	10 년
Class A	230,078	512,202	823,244	1,747,570
Class C 가입자로 자동전환시	231,906	688,131	1,130,130	2,402,719
Class C-E	176,194	555,451	973,576	2,216,165
Class C-F	81,175	255,903	448,539	1,021,015
Class C-H	175,750	554,052	971,124	2,210,584
Class C-W	75,897	239,265	419,375	954,63
Class S	111,185	350,511	614,364	1,398,485
Class S-P	98,168	309,474	542,436	1,234,755
Class C-P	151,227	476,744	835,622	1,902,138
Class C-P2	156,197	492,410	863,079	1,964,640

Class A-E	153,934	378,188	625,427	1,360,152
Class C-G	145,751	459,479	805,360	1,833,253
Class C-PE	113,264	357,065	625,851	1,424,634
Class C-P2E	115,791	365,032	639,816	1,456,422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Class S 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ass C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3)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4)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 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저축가입일로부터 3 년간의 3 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 년간의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 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 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만원(연간 1,200 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
   (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 가 2009.7.1 에 3 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u>가. 2009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u>

나. 2010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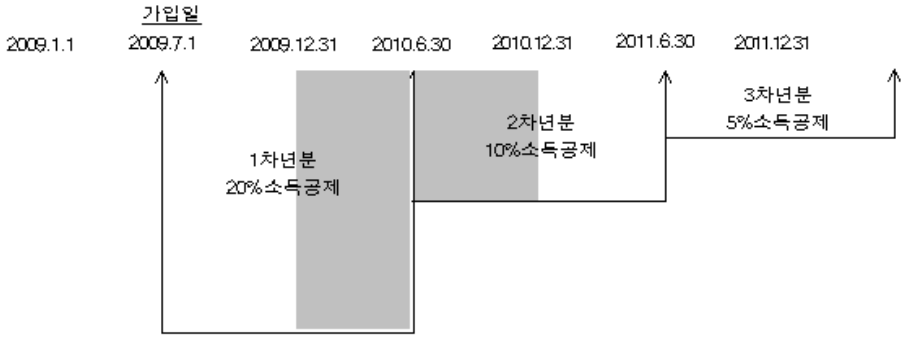

(5) 기타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Class(Class C-H) 세제혜택

만 18 세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 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51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① 가입자격

가입대상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제 혜택	-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연간 불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단, 소득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1)]의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하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름.)
비과세 요건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 부여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단,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합계금액 기준)

1) 소득세법 제 52조 제2항 제2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1)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없는 경우 (2)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해당됨 ※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근로소득 공제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세액 추징하는 경우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 저축납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8%)에 상당하는 금액 -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추징함. 단, 저축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 추징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 투자신탁을 이용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ㅇ 저축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등
- ㅇ 통장표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
- ㅇ 가입대상: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ㅇ 불입금액: 분기당 300만원 이내 ㅇ 계약기간: 7년 이상
- ㅇ 계약유지: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6)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 천재지변

수령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7)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5.1.1.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서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7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재무정보(단위 : 원)			
항 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6.11.02	2015.11.02	2014.11.02
운용자산	152,120,779,255	178,504,752,083	16,302,879,608
유가증권	148,070,076,645	170,119,048,930	15,756,843,650
현금 및 예치금	2,060,702,610	805,703,153	422,035,958
기타 운용자산	1,990,000,000	7,580,000,000	124,000,000
기타자산	436,038,035	487,075,398	808,820,334
자산총계	152,556,817,290	178,991,827,481	17,111,699,942
기타부채	1,864,403,405	49,108,412,510	2,790,052,498
부채총계	1,864,403,405	49,108,412,510	2,790,052,498
원본	181,427,681,667	129,883,414,971	14,321,647,444
이익조정금	-30,735,267,782	0	0
자본총계	150,692,413,885	129,883,414,971	14,321,647,444
운용수익	-27,676,025,596	9,145,434,279	2,284,362,201
이자수익	64,548,052	147,217,047	13,222,401
배당수익	872,637,734	113,053,620	25,829,890
매매/평가차익(손)	-29,011,159,070	8,400,491,092	2,229,356,978
기타수익	397,947,688	484,672,520	15,952,932
운용비용	3,476,016	3,975,616	538,735
매매수수료	1,056,016	1,500,766	105,861
기타비용	2,420,000	2,474,850	432,874
당기순이익	-27,679,501,612	9,141,458,663	2,283,823,466
매매회전율	41	52	24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운용펀드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14,322	14,322	184,675	247,328	69,113	94,197	129,883	176,594
2015/11/03~2016/11/02	129,883	129,883	301,905	312,604	250,361	264,115	181,428	150,692
2016/11/03~2017/11/02	181,428	150,692	158,599	136,819	155,819	135,840	184,208	178,943

(2)Class A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9,130	9,130	65,846	89,249	24,889	33,480	51,032	68,537
2015/11/03~2016/11/02	51,032	51,032	43,461	45,596	45,371	48,139	66,616	54,591
2016/11/03~2017/11/02	66,616	54,591	23,498	19,893	26,014	22,332	64,100	60,661

(3)Class C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1,773	1,773	62,208	83,385	11,448	15,169	52,676	70,184
2015/11/03~2016/11/02	52,676	52,676	52,832	54,943	99,002	105,262	24,014	19,483
2016/11/03~2017/11/02	24,014	19,483	9,962	8,196	32,015	26,080	1,961	1,820

(4)Class C2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1,551	1,551	1,546	1,814	2,382	2,620	847	1,129
2015/11/03~2016/11/02	847	847	54,299	56,747	12,455	12,952	42,972	34,906
2016/11/03~2017/11/02	42,972	34,906	38,007	31,106	56,218	47,653	24,761	23,034

(5)Class C3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28	28	404	478	242	308	192	256
2015/11/03~2016/11/02	192	192	1,163	1,197	466	475	953	776
2016/11/03~2017/11/02	953	776	44,708	38,086	6,190	5,326	39,472	36,822

(6)Class C4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72	72	45	55	90	104	35	47
2015/11/03~2016/11/02	35	35	254	253	42	43	259	211
2016/11/03~2017/11/02	259	211	1,150	957	452	382	957	895

(7)Class C5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43	43	45	56	12	15	86	115
2015/11/03~2016/11/02	86	86	28	28	21	22	122	100
2016/11/03~2017/11/02	122	100	224	190	68	59	278	260

(8)Class C-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2,027	2,027	33,968	45,912	11,553	15,405	24,631	32,970
2015/11/03~2016/11/02	24,631	24,631	32,751	34,163	30,594	32,162	35,105	28,628
2016/11/03~2017/11/02	35,105	28,628	13,249	11,121	15,277	13,000	33,077	31,006

(9)Class C-F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0	0	18,610	20,000	18,610	24,473	0	0
2015/11/03~2016/11/02	0	0	15,000	15,000	10,000	10,182	5,000	4,147
2016/11/03~2017/11/02	5,000	4,147	16,124	15,000	11,239	10,113	9,885	10,880

(10)Class C-W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6/03/14~2016/11/02	0	0	32	31	0	0	32	24
2016/11/03~2017/11/02	32	24	4	3	1	0	35	31

(11)Class S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1/03~2015/11/02	44	44	2,308	3,087	1,016	1,352	1,338	1,800
2015/11/03~2016/11/02	1,338	1,338	4,005	4,197	2,677	2,776	3,127	2,567
2016/11/03~2017/11/02	3,127	2,567	1,310	1,112	2,216	1,896	2,221	2,110

(12)Class S-P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5/06/09~2015/11/02	14	14	1,029	1,124	520	555	509	515
2015/11/03~2016/11/02	509	509	917	966	659	690	772	635
2016/11/03~2017/11/02	772	635	716	603	640	549	848	807

(13)Class C-P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5/06/29~2015/11/02	0	0	429	379	11	10	418	365
2015/11/03~2016/11/02	418	365	5,961	5,455	3,116	2,850	3,263	2,334
2016/11/03~2017/11/02	3,263	2,334	7,024	5,213	3,914	2,936	6,373	5,254

(14)Class C-P2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5/12/02~2016/11/02	256	256	2,913	2,911	962	933	1,951	1,520
2016/11/03~2017/11/02	1,951	1,520	3,719	3,016	2,043	1,675	3,627	3,256

(15)Class A-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6/08/31~2016/11/02	0	0	85	78	0	0	85	72
2016/11/03~2017/11/02	85	72	2,149	1,917	965	866	1,269	1,235

(16)Class C-G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11/01~2017/11/02	3	3	3	3	0	0	3	3

(17)Class C-P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9/27~2017/11/02	0	0	12	13	0	0	12	13

(18)Class C-P2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9/01~2017/11/02	3	3	210	219	18	18	193	20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전자 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

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16/11/03~ 2017/11/02	2015/11/03~ 2017/11/02	2014/11/03~ 2017/11/02	2012/11/03~ 2017/11/02	(%)
운용	2009-11-03	16.96	-1.44	9.71	8.38	10.40
ClassA	2009-11-03	15.48	-2.72	8.31	7.00	9.01
ClassC	2009-12-15	14.38	-3.66	7.32	6.01	7.40
ClassC-E	2009-11-12	14.95	-3.18	7.85	6.52	8.45
ClassC-F	2012-01-18	18.22	-0.08	6.76	7.17	5.96
ClassC-H	2009-12-16	-	-	-	-	0.22
ClassC-W	2016-03-14	16.09	-	-	-	-7.10
ClassS	2014-04-22	15.68	-2.54	8.50	-	9.33
ClassS-P	2015-06-09	15.83	-2.41	-	-	-1.55
ClassC-P	2015-06-29	15.23	-2.93	-	-	-7.88
ClassC-P2	2015-12-02	15.17	-	-	-	-5.46
ClassA-E	2016-08-31	15.79	-	-	-	-2.28
ClassC-G	2017-11-01	-	-	-	-	20.01
ClassC-PE	2017-09-27	-	-	-	-	179.87
ClassC-P2E	2017-09-01	-	-	-	-	6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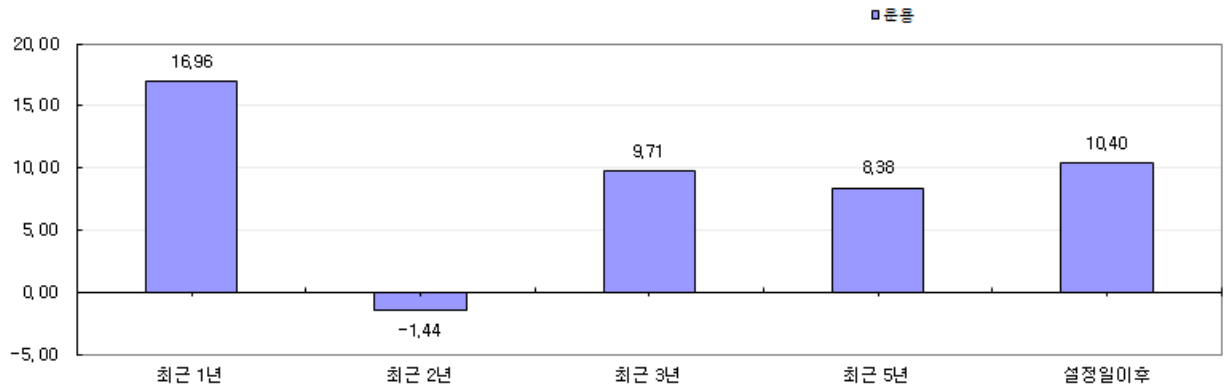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6/11/03~ 2017/11/02	2015/11/03~ 2016/11/02	2014/11/03~ 2015/11/02	2013/11/03~ 2014/11/02	2012/11/03~ 2013/11/02
운용펀드	2009-11-03	16.96	-16.94	35.96	12.82	0.36
ClassA	2009-11-03	15.48	-18.05	34.30	11.40	-0.90
ClassC	2009-12-15	14.38	-18.87	33.24	10.34	-1.85
ClassC-E	2009-11-12	14.95	-18.45	33.86	10.89	-1.40
ClassC-F	2012-01-18	18.22	-15.55	21.89	-	16.20
ClassC-H	2009-12-16	-	-	-	-	-
ClassC-W	2016-03-14	16.09	-	-	-	-
ClassS	2014-04-22	15.68	-17.90	34.50	-	-
ClassS-P	2015-06-09	15.83	-17.78	-	-	-
ClassC-P	2015-06-29	15.23	-18.24	-	-	-
ClassC-P2	2015-12-02	15.17	-	-	-	-
ClassA-E	2016-08-31	15.79	-	-	-	-
ClassC-G	2017-11-01	-	-	-	-	-
ClassC-PE	2017-09-27	-	-	-	-	-
ClassC-P2E	2017-09-0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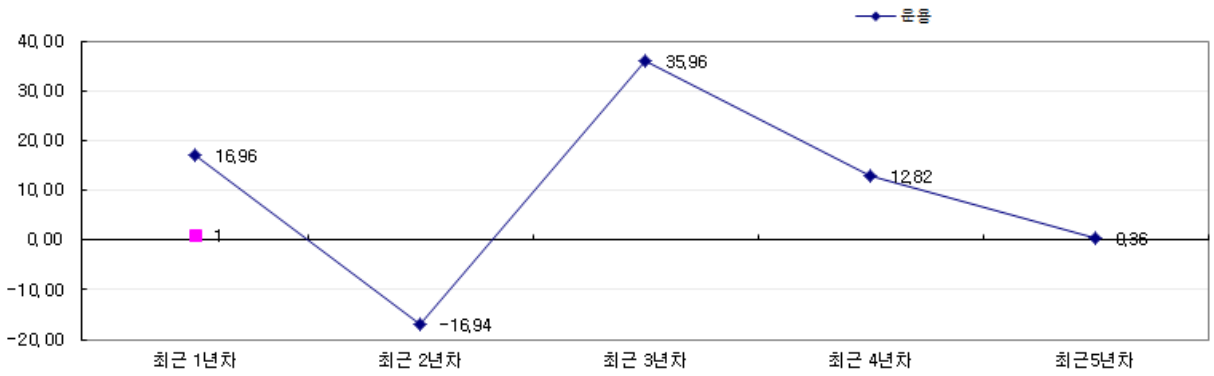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2017.11.2 기준) (단위 : 백만)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대한민국	176,782	0	0	320	0	0	2,331	1,058	180,491
	(97.95)	(0.00)	(0.00)	(0.18)	(0.00)	(0.00)	(1.29)	(0.59)	(100.00)
자산합계	176,782	0	0	320	0	0	2,331	1,058	180,491
	(97.95)	(0.00)	(0.00)	(0.18)	(0.00)	(0.00)	(1.29)	(0.5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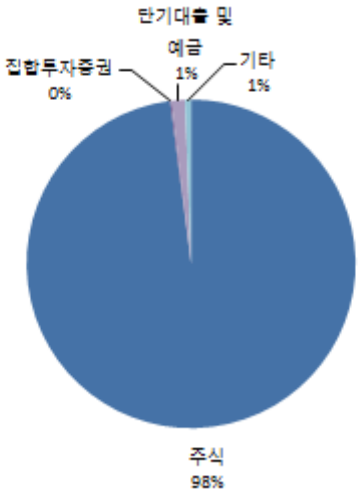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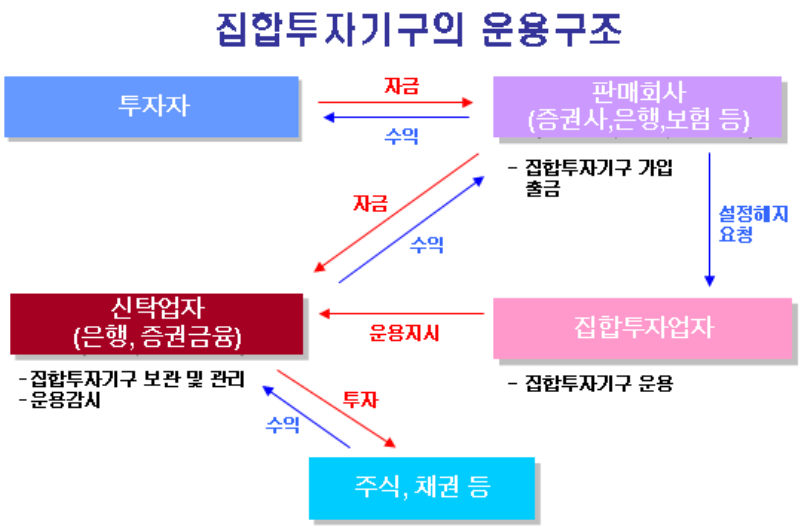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D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02-787-3700)	www.db-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의 위탁

-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목	21 기 (2016.12.31)	20 기 2015.12.31)
Ⅰ. 현금 및 예치금	39,909,486,453	36,640,751,697
Ⅱ. 매도가능금융자산	1,779,266,559	2,088,621,606
Ⅲ. 대출채권	370,879,430	263,134,750
Ⅳ. 유 형 자 산	173,800,427	105,130,281
Ⅴ. 기타자산	4,547,384,336	4,795,933,564
자 산 총 계	46,780,817,205	43,893,571,898
Ⅰ. 기타부채	2,486,138,419	2,845,261,158
부 채 총 계	2,486,138,419	2,845,261,158
Ⅰ. 자 본 금	30,000,000,000	30,000,000,000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1,296,937	-
Ⅲ. 이 익 잉 여 금	14,535,975,723	11,048,310,740
자 본 총 계	44,294,678,786	41,048,310,74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6,780,817,205	43,893,571,898

(2)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목	21 기 (2016.12.31)	20 기 (2015.12.31)
Ⅰ. 영 업 수 익	19,591,923,901	19,126,563,714
Ⅱ. 영 업 비 용	13,547,558,174	13,200,930,300
Ⅲ. 영 업 이 익	6,044,365,727	5,925,633,414
Ⅳ. 영 업 외 수 익	46,008,855	633,876
Ⅴ. 영 업 외 비 용	50,501,191	3,286,103,11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039,873,391	2,640,164,180
Ⅶ. 법인세비용	1,352,208,408	626,689,857
Ⅷ. 당 기 순 이 익	4,687,664,983	2,013,474,323

라. 운용자산규모(2017.11.2 기준 /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8,242	1,462	26,550	37,418	18,868	451	9,727	3,701	743	107,16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1566-2566)	www.ibk.co.kr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하나펀드서비스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다동) 한외빌딩 9층 (02-757-0393)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 전 함에 따라 그 집합 투 자 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 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 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 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 22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거래일	거래내용	이체펀드명	이수펀드명	종목명	거래금액
2016-04-15	주식 이체/이수	DB 성장모[주식]	DB 바이오헬스케어 1[주식]	원익홀딩스	1,022,287
2016-04-15	주식 이체/이수	DB 가치모[주식]	DB 바이오헬스케어 1[주식]	원익아이피에스(신설)분할(보)	1,138,214
2016-04-15	주식 이체/이수	DB 성장모[주식]	DB 바이오헬스케어 1[주식]	원익아이피에스(신설)분할(보)	1,075,613
2016-04-15	주식 이체/이수	DB 가치모[주식]	DB 바이오헬스케어 1[주식]	원익홀딩스	1,081,786

(3)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델타	옵션의 민감도 중 하나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옵션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며 옵션의 민감도 중 델타는 가장 중요한 값으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옵션을 헤징할 때 헤징비율로 이용됩니다. 델타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 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거의 같은 가격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